

#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긴급복지 지원항목인 생계비, 의료비, 교육비 등 급여지원에 대한 비용 발생함.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2호
 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 3. 미첨부 사유

-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시행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비, 시비, 구비가 50:25:25 비율로 분담되고 있음.
-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위기사유가 신설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예산의 규모가 정해지는 것으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비용 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.

### 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김수연
연락처	02-2241-2325